

## 제1조 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⑩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⑪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수급자
- ⑫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 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⑭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영아수당 수급자
- ⑮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4조 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 (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6조 금리적용 및 이자결산

-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당일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② 이자는 매월 셋째 토요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③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④ 이 통장의 적용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

## 제7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타행이체 송금 수수료 및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부 칙 (변경사항)

변경일	내 용	관련조항	기가입고객 적용여부
2012.03.22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4.08.01	가입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제3조	적용
2014.11.21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5.01.01	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제7조	적용
2015.07.17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5.08.25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7.06.05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8.06.20.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8.09.13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19.04.01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20.11.26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22.04.07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23.10.04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
2024.03.18	가입대상 확대	제3조	적용